

제17회 화재조사관 자격 필기시험 장소 공고

제17회 화재조사관 자격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10월 28일
소 방 청 장

I. 시험일시: 2022. 11. 12.(토) 10:00 ~ 15:00

구 분	시험시간	시험과목
1차 시험 (객관식)	10:00 ~ 11:15 (75분)	화재조사론, 화재학, 화재원인판정
2차 시험 (주관식)	13:00 ~ 15:00 (120분)	화재감식학, 화재조사실무

※ 코로나19 격리대상자는 자진 신고하여야 별도시험 응시 가능 **【공고문 6P 참고】**

II. 시험장소

시험장	주 소	출입구			입구기준
		구분	개방시간	폐쇄시간*	
중앙소방학교 (공주)	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 (계실리)	1차시험	08:30	09:30:01	강의동 2층 주출입구
		2차시험	-	12:30:01	

* 1차 시험 면제자는 12:30:00까지 입장 / 폐쇄시간 이후에는 입장 불가

※ 개인별 시험실은 응시표를 출력하여 확인

III. 준비물

가. (응시표) '22. 11. 9.(수) 10:00 119고시 누리집에서 출력*

* 119고시 누리집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표 출력

나. (신분증) 소방공무원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※ 전자신분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 불가

다. (필기구) 1교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, 2교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

IV. 응시자 안내사항

1 일반사항

가. **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**

☑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

- ▶ 인 정: 소방공무원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
- ▶ 불인정: 자격수첩,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, 신분증 사진
※ 응시표 출력 후 필기시험에 지참할 것

나.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:30:00 까지 시험장에 입장(1차 시험 면제자는 12:30:00)하여야 하며(이후 입장 불가),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함

☑ 시험장 폐쇄시간 및 유의사항

- ▶ 시간 기준: 08:30에 개방하여 09:30:00까지 입장, 09:30: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출입구 폐쇄
- ▶ 입구 기준: 중앙소방학교 강의동 2층 출입구
- ▶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, 교통편,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,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
- ▶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함

다.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 및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공고함.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(시험일시, 장소 등)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※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음

라. 모든 시험은 우천,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와 일정 등을 공지함

마.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,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,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

바. **응시자격 요건**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, 책상, 벽 등에 필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

2 답안지 작성 및 부정행위 등 안내

2-1. 1차 시험 답안지

- 가. 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,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음
- 나.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음
- 1)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함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 - 2)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
☑ 채점오류(귀책 사유) 사례

- ▶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
- ▶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
- ▶ 답안지 여백 낙서,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한 경우
- ▶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
- ▶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(연필, 샤프, 적색펜 등) 사용한 경우
- ▶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
- ▶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■■■■)를 훼손한 경우
- ▶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,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○ ⊗ ⊙ ⊖ ⊕ ⊗ ⊙ ⊖ ⊕

- 다.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야 함
- 1) (자필성명)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해야 함.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음
 - 2) (필적확인란 기재)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
 - 3) (교체답안지 작성)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, 자필성명, 응시번호,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(표기)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함

2-2. 2차 시험 답안지

- 가.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며, 이의제기 시 반영되지 않음
- 나. 답안지는 1과목당 1부씩만 배부되며, 2과목 총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※ 과목면제자는 1과목 1부 제출
- 다. 답안작성은 답안지 문제번호와 시험지 문제번호가 같은지 확인하고, 답안을 가로쓰기로 작성해야 함
- 라. 답안지에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(사인펜이나 연필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)를 사용하되, 동일한 필기구를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함
- 마. 답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고,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다음부터(또는 여백에) 다시 작성하여야 함
- 바. 표지에 응시번호, 성명 기재란과 답안란 매 페이지 상단의 응시번호란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

2-3. 부정행위 등 안내

- 가.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됨
- 1) 휴대용전화기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카메라 안경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, 무선호출기, 이어폰, PDA, 스마트워치, 전자계산기, 전산기기, 태블릿 PC 등
 - 2)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(off)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됨

- 나.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
- 다.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해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
- 라. 시험시간 관리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
- 마. 2차 시험에 한하여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다음의 사용 원칙과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
 - ※ 1차 시험은 화장실 이용이 제한되며,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고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함

☑ 화장실 사용 준수사항

사용원칙

- 사용시간: 13:30 ~ 14:40 (시험시작 30분 이후 ~ 시험종료 20분 전)
 - ※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
- 사용횟수 : 1인당 1회에 한함

사용절차

-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(소음주의)
 - ※ 사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순서대로 1명씩 이용
-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복도로 이동,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 이동
- 응시자 소지품 검사(동성 복도감독관이 실시):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줌
-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및 용변 칸 사용
- 화장실 사용 후 복도감독관이 소지품 검사 재실시
- 복도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실 입실

유의사항

-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(시험본부 대기)
- 시험 관련 자료 등 소지,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
-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 기준
 - ※ 2차 시험 14:39:59에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화장실 사용 및 재입실 가능

- 바. 답안지에 성명, 생년월일, 응시번호, 시험감독관 서명,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 답안으로 처리함

☑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무효답안처리 기준

- 부정행위자 조치: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1조 준용
- 시험지(문제지)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- 사.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

V.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등 안내

- 가.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(본인)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로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함 ※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나.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반드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에 신고하여야 시험 응시가 가능함
- 다. 확진자 시험응시 절차



【코로나19 별도시험장 운영 안내】

1. (대 상) 시험 응시자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되며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

-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*로 시험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
* 자가격리자: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내 접촉자
- ② 신속항원검사(자가진단키트) 양성이고,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

2. (신청기간) 2022. 11. 7.(월) 09:00 ~ 11. 11.(금) 18:00까지

※ '22. 11. 11.(금) 18:00까지 자진신고 및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필기시험 응시가 불가함.

3. (신청방법)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**통보(044-205-7294)** 후 서류 e-메일 제출(rok409@korea.kr)

※ 전화 통화 연결이 안되는 경우 관련 서류 메일로 우선 제출

4. (제출서류)

- ① (공통)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【서식2】
- ②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【서식3】
- ③ (병원입원·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) 시험 응시 가능 의사소견서

구 분	제출서류	유의사항
확진(재택치료)	①, ②	1.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. 별도시험을 신청한 모든 응시자는 확진자 별도시험장에서만 시험응시 가능(병원 등의 시설 응시 불가)
확진(병원·생활치료)	①, ②, ③	
자가격리자	①, ②	
※ 신속항원검사(자가진단키트) 양성이고, 시험일까지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, ② 서류 제출		

※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(시험안내) 별도시험 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

6. (유의사항)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허위 검사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VII. 필기시험장 위치

□ 중앙소방학교: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 (계실리)

위 치

교통편 안내	기타사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택 시: 공주버스터미널 ↔ 중앙소방학교(20분, 16km) ◦ 버 스: 217번, 720번, 721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차: 정문 통과 후 좌측 주차장 이용(운영요원 안내) ◦ 응시번호별 시험실은 시험당일 본관입구 안내도 확인

VI. 필기시험 이후 일정

출제문제 문의	1차 시험 합격자 공고	최종 합격자 공고
11. 12.(토)~11.13.(일)	11. 23.(토) 14:00	12. 23.(금) 14:00
119고시 누리집	119고시 누리집	119고시 누리집

- 필기시험: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☎ 044-205-7287~7294
 - 인증서 발급: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☎ 044-205-7472
- <문의방법> (평일 근무시간 : 09:00 ~ 18:00 / 점심시간 제외)

【서식 1】

필기시험 문제문의서

문 제 문 의	성 명		응시번호	
연 락 처	휴 대 전 화			
	전 자 우 편			
응 시 분 야	응 시 시 도			
	응 시 분 야			
문 의 과 목	해 당 과 목			
	문 향 번 호		번	

<출제문제>

<사유 및 관련근거> -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

<응시자 의견>

【서식 2】

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

인적사항

성 명		주 민 등 록 번 호	-
휴 대 전 화	- -	응 시 번 호	
현 주 소 지			
격 리 기 간		관 할 보 건 소 (담당부서 및 연락처)	
신 청 사 유			

제출 서류

※ 서류 제출현황 (제출시 에 'V' 체크)

- ①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(공통)
- ②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(공통)
- ③ 의사 소견서(병원입원·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)

구 분	제출서류	유의사항
확진(재택치료)	①, ②	1.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
확진(병원·생활치료)	①, ②, ③	2. 별도시험을 신청한 모든 응시자는 확진자 별도시험장에서만 시험응시 가능(병원 등의 시설 응시 불가)
자가격리	①, ②	

※ 신속항원검사(자가진단키트) 양성이고, 시험일까지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, ② 서류 제출

※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상기 본인은 2022년 소방공무원 자격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신청자

서명 또는 인

소방청장 귀하

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(별도 시험용)

코로나19 확진·자가격리자 등의 시험응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기본 개인정보 수집·활용

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	성명, 휴대전화, 주소
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, 다만,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.

■ 고유식별정보 수집·활용

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	고유식별정보 항목 : 주민등록번호
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, 다만,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.

■ 개인정보 제3자 제공
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	질병관리청, 관할 보건소 등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	응시자 확진·자가격리 여부 확인
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휴대전화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5년
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. 다만,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.

개인정보 제3자 제공, 기본개인정보·고유식별정보 수집·활용 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

■ 개인정보 취급자

소속	직급	성명	연락처	이메일	개인정보보호 책임자

년 월 일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소방청장 귀하

코로나19 별도 시험장 운영 안내

1. (대 상) 시험응시자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하고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

-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*로 시험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
* 자가격리자: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내 접촉자
- ② 신속항원검사(자가진단키트) 양성이고,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

2. (신청기간) 2022. 11. 11.(금) 18:00까지 별도시험 응시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

3. (신청방법)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유선통보(044-205-7294) 및 e-메일 제출 (rok409@korea.kr)

4. (제출서류)

- ① (공통)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
- ②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- ③ (병원입원·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) 시험 응시 가능 의사소견서

구 분	제출서류	유의사항
확진(재택치료)	①, ②	1.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. 별도시험을 신청한 모든 응시자는 확진자 별도시험장에서만 시험응시 가능(병원 등의 시설 응시 불가)
확진(병원·생활치료)	①, ②, ③	
자가격리자	①, ②	
※ 신속항원검사(자가진단키트) 양성이고,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, ② 서류 제출		

5. (시험안내)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

6. (유의사항)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허위 검사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

▼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마스크(KF80이상, 코와 입 막음)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.

※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※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

▼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응시자와 1.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,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
▼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
▼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각 시험단계별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.